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재민 등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을 구호대상에 포함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84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4.
3. 회부연월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가 동반하는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구호기관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주거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맞추어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이재민(罹災民)의</u>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이재민(罹災民) 등의</u> ----- ----- ----- ---- <u>이재민 등의 보호와</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u>대상자</u> (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u>대상</u> ----- ----- ----- ----- ----- -----.

현행	개정안
4. ~ 8. (생략)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② (생략) <u><신 설></u> ③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제3조(구호의 대상) ----- -----<u>호를</u>----- -----. 1. ~ 3. (현행과 같음) 4. <u>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가 동반하는 반려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u>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구호기관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주거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및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구호의 대상으로 정하고¹⁾, 임시주거시설·급식·생활필수품 등의 구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022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이 약 25.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에 대한 구호·지원이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을 구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구호기관으로 하여금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주거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반려동물 가구 수 및 비중(2022년)]

(단위: 명, %)

합계	반려동물 비양육	반려동물 양육								
		다른 거주지에서 양육	현 거주지에서 양육							
			합계	개	고양이	물고기	햄스터	거북이	새	기타
5,000 (100.0)	3,627 (72.5)	101 (2.0)	1,272 (25.4)	961 (19.2)	352 (7.0)	93 (1.9)	19 (0.4)	13 (0.3)	13 (0.3)	30 (0.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구호의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임.

2)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려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서, 반려가구인 이재민 구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지원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전향적인 관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반려동물 구호는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재민 구호행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재해구호법」의 구호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는 것보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유지하고, 「동물보호법」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동물보호법」은 재난 시 소유자등이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³⁾.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 인한 임시주거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반려동물의 소음 및 감염병 우려 등으로 인해 다른 이재민에게 불편 및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반려동물 동반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구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추가되어 원활한 이재민 구호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체⁴⁾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난 시 반려동물을 구호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행법 개정보다는 「동물보호법」에 관련 세

3) 「동물보호법」

제9조(적절한 사육·관리)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동물위탁관리업체 현황(2023년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농식품부): 최근 5년간 약 60% 증가
- '18년(2,745개소), '19년(3,809개소), '20년(4,406개소), '21년(4,802개소), '22년(5,034개소)

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임.

[참고: 반려동물의 구호대상 포함에 관한 관련기관 의견]

- 2024년 지자체 의견조회('24.7.1.~7.4.): 총 1건(경기도) 의견제출*
 - 현행 구호법 유지 필요(동물보호법에서 규정)
 - ① 위생관리, 소음 문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불편·불안을 초래
 - ② 임시주거시설 관리비용 증가
 - ③ 재정 부담 발생 및 구호현장의 혼선 우려
- 2023년 중앙부처·지자체 등 의견조회('23.10.11.~10.17.): 총 6건* 의견제출
 - * 지자체(구호기관) 4건(대구시·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 농식품부 1건, 재난안전연구원 1건
 - (지자체) 구호기관인 지자체는 「재해구호법」상 구호의 대상은 현행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 유지, 반려동물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9조4항을 좀 더 세분화 하는 것이 적절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 수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동반 주거 형태 외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임시주거시설(함께주거, 별도구역 동반, 위탁시설 연계)도 포함하는 포괄적 임시주거 형태 제시
 - (재난안전연구원) 법 개정의 취지가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재민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기존 법의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로 한정하여도 반려동물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음
 - 생명권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 취지상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동물보호 관련 예산 편성, 위기관리매뉴얼 상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로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이후인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를 개정하여 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상대비 운영계획의 기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②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및 해당 반려동물에게 구조, 돌봄, 피난처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음.⁵⁾

문 의 처
02)6788-5349

-
- 5)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SEC. 613. CONTRIBUTIONS FOR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g) STANDARDS FOR STATE AND LOCAL EMERGENCY PREPAREDNESS OPERATIONAL PLANS.—In approving standards for State and local emergency preparedness operational plans pursuant to subsection (b)(3), the Administrator shall ensure that such plans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individuals with household pets and service animals prior to, during, and following a major disaster or emergency.
- SEC. 403. ESSENTIAL ASSISTANCE.
 (a) IN GENERAL.—Federal agencies may on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provide assistance essential to meeting immediate threats to life and property resulting from a major disaster, as follows:
 (3) WORK AND SERVICES TO SAVE LIVES AND PROTECT PROPERTY.—Performing on public or private lands or waters any work or services essential to saving lives and protecting and preserving property or public health and safety, including —
(J) provision of rescue, care, shelter, and essential needs—
(i) to individuals with household pets and service animals; and
(ii) to such pets and animals.